



나를 찾아가는 학교  
미래를 만드는 학교

## 가 정 통 신 문

경희대학교 병설 자율형사립고  
경 희 고 등 학 교

### 제 목 :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안내

학부모님께!

항상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관심을 갖으시고 학교 교육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제158차 (2020- 제3회) 경희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·자문된 안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1. 회의 일시 : 2020. 7. 22.(수) 16:00
2. 장 소 : 우리학교 세미나실(본관 3층)
3. 처리 안건 : 학교 규정 개정 외 2건  
(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)

붙임 :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·자문 처리 결과 안내 1부. 끝.

2020년 7월 일

경 희 고 등 학 교 장



나를 찾아가는 학교  
미래를 만드는 학교

# 가 정 통 신 문

경희대학교 병설 자율형사립고  
경희고등학교

## 제158회 경희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안건 심의·자문 처리 결과 안내

- 회의 일시 : 2020.7.22. (수) 16:00
- 장 소 : 우리학교 세미나실(본관 3층)
- 참석 인원 : 10
- 안건 심의·자문 결과

번호	안 건 명	심의 결과	내 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학교 규정 개정	원안 가결	<b>2020학년도 학교규정 개정 신규대비표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부서</th> <th>규정</th> <th>초항</th> <th>변경 전</th> <th>변경 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교무부</td> <td>학업성적관리 규정</td> <td>제6조</td> <td>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학기 초 및 정기고사별 2회 이상,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</td> <td>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</td> </tr> <tr> <td>교무부</td> <td>학업성적관리 규정</td> <td>제15조 ④</td> <td>④ 2. 감독교사는 고사 시행 5분 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하여 입실하고 6.7로 추가</td> <td>④ 2. 감독교사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하여 고사 시행 5분 전에 입실하고 6. 감독교사는 휴대전화, 시계 등 감독 업무에 방해되는 물건을 고사실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 되며, 감독 업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 7. 감독교사는 답안지 인적사항 표시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험실 앞 중앙에 서서 감독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교무부</td> <td rowspan="5">학생 추천 규정</td> <td>제2조</td> <td>본 규정의 「학교장 추천 전형」이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(예: 서울대 지역균형, 고려대 학교장추천, 서울시립대 논술전형,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등)</td> <td>본 규정의 「학교장 추천 전형」이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</td> </tr> <tr> <td>제3조</td> <td>②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한 피추천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전원 그대로 추천할 수 있으나,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추천 기준을 모대로 학교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거 추천한다. ③ 대학의 전형요소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요소와 무관한 경우(예 : 서울시립대 논술전형) 추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대학의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인원을 선정한다.</td> <td>②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한 추천희망 학생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전원 그대로 추천할 수 있으나, 희망 학생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의 인적사항 및 전형 요소를 모대로 학교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대상 학생을 선정한다. ③ 대학의 전형 요소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요소와 무관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추천 인원을 선정한다.</td> </tr> <tr> <td>제4조</td> <td>② 담임교사 등 추천자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피추천자의 세부 능력 등을 구술, 서술하여 보다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</td> <td>②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대상 학생을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담임교사 등 추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학생의 학업능력, 발전가능성 등 학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</td> </tr> <tr> <td>제5조</td> <td>① 피추천자의 담임은 피추천자에 관한 일체의 평정 점수 산출 근거 자료를 추천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피추천 희망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년 담임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사 순위를 산정하여 통과한 뒤 추천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.</td> <td>① 대학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정리하여 공지한다. ② 3학년 담임 회의에서 개별 대학의 인적사항과 전형 요소 등을 검토하여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추천기준을 확정하고 공고한다. ③ 추천희망 학생의 담임교사는 추천기준에 따라 학생의 평정 점수 산출 근거 자료를 추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④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희망 학생을 심의하여 1.5~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하고, 학교장은 추천대상 학생을 선정한다. ⑤ 학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면접할 수 있으며, 추천심의위원회에 제청의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선정된 추천대상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(학교폭력 및 성범죄 관련 학생, 기타 중대한 비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여부 등 확인)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.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③ 학년담임 회의에서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, 추천대상 인원수의 1.5배수~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한 뒤,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. ④ 학교장은 최종 결정에 앞서 추천 후보자를 면접할 수 있으며,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.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서	규정	초항	변경 전	변경 후	교무부	학업성적관리 규정	제6조	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학기 초 및 정기고사별 2회 이상,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	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	교무부	학업성적관리 규정	제15조 ④	④ 2. 감독교사는 고사 시행 5분 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하여 입실하고 6.7로 추가	④ 2. 감독교사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하여 고사 시행 5분 전에 입실하고 6. 감독교사는 휴대전화, 시계 등 감독 업무에 방해되는 물건을 고사실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 되며, 감독 업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 7. 감독교사는 답안지 인적사항 표시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험실 앞 중앙에 서서 감독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	교무부	학생 추천 규정	제2조	본 규정의 「학교장 추천 전형」이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(예: 서울대 지역균형, 고려대 학교장추천, 서울시립대 논술전형,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등)	본 규정의 「학교장 추천 전형」이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3조	②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한 피추천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전원 그대로 추천할 수 있으나,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추천 기준을 모대로 학교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거 추천한다. ③ 대학의 전형요소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요소와 무관한 경우(예 : 서울시립대 논술전형) 추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대학의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인원을 선정한다.	②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한 추천희망 학생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전원 그대로 추천할 수 있으나, 희망 학생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의 인적사항 및 전형 요소를 모대로 학교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대상 학생을 선정한다. ③ 대학의 전형 요소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요소와 무관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추천 인원을 선정한다.	제4조	② 담임교사 등 추천자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피추천자의 세부 능력 등을 구술, 서술하여 보다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	②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대상 학생을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담임교사 등 추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학생의 학업능력, 발전가능성 등 학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	제5조	① 피추천자의 담임은 피추천자에 관한 일체의 평정 점수 산출 근거 자료를 추천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피추천 희망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년 담임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사 순위를 산정하여 통과한 뒤 추천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.	① 대학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정리하여 공지한다. ② 3학년 담임 회의에서 개별 대학의 인적사항과 전형 요소 등을 검토하여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추천기준을 확정하고 공고한다. ③ 추천희망 학생의 담임교사는 추천기준에 따라 학생의 평정 점수 산출 근거 자료를 추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④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희망 학생을 심의하여 1.5~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하고, 학교장은 추천대상 학생을 선정한다. ⑤ 학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면접할 수 있으며, 추천심의위원회에 제청의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선정된 추천대상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(학교폭력 및 성범죄 관련 학생, 기타 중대한 비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여부 등 확인)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.	
부서	규정	초항	변경 전	변경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무부	학업성적관리 규정	제6조	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학기 초 및 정기고사별 2회 이상,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	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무부	학업성적관리 규정	제15조 ④	④ 2. 감독교사는 고사 시행 5분 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하여 입실하고 6.7로 추가	④ 2. 감독교사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인수하여 고사 시행 5분 전에 입실하고 6. 감독교사는 휴대전화, 시계 등 감독 업무에 방해되는 물건을 고사실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 되며, 감독 업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 7. 감독교사는 답안지 인적사항 표시를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험실 앞 중앙에 서서 감독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무부	학생 추천 규정	제2조	본 규정의 「학교장 추천 전형」이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(예: 서울대 지역균형, 고려대 학교장추천, 서울시립대 논술전형, 가톨릭대 학교장추천 등)	본 규정의 「학교장 추천 전형」이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중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제3조	②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한 피추천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전원 그대로 추천할 수 있으나, 희망자 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에서 정한 추천 기준을 모대로 학교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거 추천한다. ③ 대학의 전형요소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요소와 무관한 경우(예 : 서울시립대 논술전형) 추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대학의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인원을 선정한다.	② 대학에서 특별히 정한 구체적인 추천 기준에 적합한 추천희망 학생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내일 경우 전원 그대로 추천할 수 있으나, 희망 학생수가 대학이 요구하는 인원수 이상일 경우에는 대학의 인적사항 및 전형 요소를 모대로 학교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추천대상 학생을 선정한다. ③ 대학의 전형 요소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요소와 무관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추천 인원을 선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제4조	② 담임교사 등 추천자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피추천자의 세부 능력 등을 구술, 서술하여 보다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	②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대상 학생을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담임교사 등 추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학생의 학업능력, 발전가능성 등 학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제5조	① 피추천자의 담임은 피추천자에 관한 일체의 평정 점수 산출 근거 자료를 추천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피추천 희망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년 담임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사 순위를 산정하여 통과한 뒤 추천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.	① 대학별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정리하여 공지한다. ② 3학년 담임 회의에서 개별 대학의 인적사항과 전형 요소 등을 검토하여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추천기준을 확정하고 공고한다. ③ 추천희망 학생의 담임교사는 추천기준에 따라 학생의 평정 점수 산출 근거 자료를 추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④ 추천심의위원회는 추천희망 학생을 심의하여 1.5~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하고, 학교장은 추천대상 학생을 선정한다. ⑤ 학교장은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학생을 면접할 수 있으며, 추천심의위원회에 제청의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선정된 추천대상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(학교폭력 및 성범죄 관련 학생, 기타 중대한 비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여부 등 확인)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③ 학년담임 회의에서 추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, 추천대상 인원수의 1.5배수~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한 뒤,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. ④ 학교장은 최종 결정에 앞서 추천 후보자를 면접할 수 있으며,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	안	심	내	비
번	건	의	용	고
	명	결		
		과		

**2021 대입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 선발 기준**

- 근거 : 2020학년도 학교규정
- 평가 요소 : 교과 영역 60% + 비교과 영역 40%

영역	교과 (60점)	비교과 (40점)				계
	가	나	다	라	마	
구분	교과 성적	출결	수상 경력	봉사 활동	행동특성 및 인성	
<b>점수</b>	<b>60</b>	<b>10</b>	<b>10</b>	<b>10</b>	<b>10</b>	<b>100</b>

※ 항목별 점수는 최고점, 최저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- 평가 서류: 학교생활기록부(2020.08.20. 기준)
- 평가 요소별 세부 기준

가. 교과 성적(60점)

1) 추천을 의뢰한 대학의 선발 기준에 의해 교과 성적을 산출한 후 석차백분율 2% 미만인 경우 석차백분율 0.5%이내를 60점 만점으로 하고 0.1%증가할 때마다 1점씩 감점한다. 2% 이상인 경우 0.2%마다 1점씩 감점한다.

석차백분율	0.5%미만	0.5%이상 -0.6%미만	0.6%이상 -0.7%미만	0.7%이상 -0.8%미만	0.8%이상 -0.9%미만	0.9%이상 -1.0%미만	...
점수	60	59	58	57	56	55	...
석차백분율	1.9%이상 -2.0%미만	2.0%이상 -2.2%미만	2.2%이상 -2.4%미만	2.4%이상 -2.6%미만	2.6%이상 -2.8%미만	2.8%이상 -3.0%미만	...
점수	45	44	43	42	41	40	...
석차백분율	4.8%이상 -5.0%미만	5.0%이상 -5.2%미만	5.2%이상 -5.4%미만	5.4%이상 -5.6%미만	5.6%이상 -5.8%미만	5.8%이상 -6.0%미만	...
점수	30	29	28	27	26	25	...

2) 학생부종합전형(이하 학종)의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는 2점수를 활용하며 학년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.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은 학종이지만 대학에서 제시한 교과 성적 산출 기준(인문: 국수영사 전 과목, 석차등급, 이수단위 미반영, 학년 구분 없음 / 자연: 국수영과 전 과목, 석차등급, 이수단위 미반영, 학년 구분 없음 / 예체능: 국영 전 과목, 석차등급, 이수단위 미반영, 학년 구분 없음)에 의해서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.

2021 대입 수시  
모집 학교장 추천  
전형 대상자 선발  
기준

원안  
가결

연번	안건명	심의결과	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2021 대입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 선발 기준	원안가결	<p>나. 비교과 성적(40점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출결 : 미인정 결석·조퇴·결과가 있을 경우 각각 1점씩 감점한다.</li> <li>2) 수상경력 : 교내수상 20개를 기준으로 부족한 경우 2개마다 1점씩 감점한다.</li> <li>3) 봉사시간 : 100시간을 기준으로 부족한 경우 10시간마다 1점씩 감점한다.</li> <li>4) 활동특성 및 인성 : 교과지도교사나 담임교사의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경우 1점씩 감점한다.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가톨릭대 의예과 학교장추천전형은 1, 2학년 의학교정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.</li> <li>6. 학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추천 전형의 경우 한 대학에 추천된 학생은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학에도 중복추천을 받을 수 있다.</li> <li>7. 신청일 마감 이후 미달된 대학의 추천 전형이 발생할 경우 담임교사가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신청할 수 있다.</li> <li>8. 대학별 인원 제한이 없는 추천 전형(예를 들어 가톨릭대(의예과 제외), 건국대 KU학교추천, 국민대 학교장추천, 서울교육대 학교장추천 등)일지라도 학교장이 인성이나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.</li> <li>9.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반드시 해당 전형에 지원하여야 한다.</li> <li>10.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원서 접수 전 학교장 면접을 통해 지원 모집 단위(계열 혹은 학과)를 최종 결정한다. 학교장 면접을 통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추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다시 선발한다.</li> <li>11.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3학년 1학기, 2학년, 1학년 교과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한다.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2020학년도 1학기 외부학습교재 사용계획	원안가결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(2학년)</b></p> <p><b>1. 방과후학교 일정(오프라인 등교일에만 운영)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23 1265 1332 1500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월</th> <th>화</th> <th>수</th> <th>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방과후 1주차</td> <td>6/29 (①)</td> <td>6/30 (①)</td> <td>7/1 (②)</td> <td>7/2 (②)</td> </tr> <tr> <td>온라인 수업</td> <td>7/6</td> <td>7/7</td> <td>7/8</td> <td>7/9</td> </tr> <tr> <td>방과후 2주차</td> <td>7/13 (③)</td> <td>7/14 (③)</td> <td>7/15 (④)</td> <td>7/16 (④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23 1563 1332 1769"> <thead> <tr> <th>수업시간</th> <th>월</th> <th>화</th> <th>수</th> <th>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방과후수업 1교시(16:10~17:00)</td> <td>가(화학)</td> <td>라(물리학)</td> <td>나(생명과학)</td> <td>라(물리학)</td> </tr> <tr> <td>방과후수업 2교시(17:10~18:00)</td> <td>나(생명과학)</td> <td></td> <td>가(화학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2. 방과후학교 강좌 및 수강료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34 1832 1332 2123"> <thead> <tr> <th>수업시간</th> <th>강좌명</th> <th>담당교사</th> <th>장소</th> <th>인원</th> <th>시수</th> <th>수강료(원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군</td> <td>화학 I</td> <td>구*찬</td> <td>2-2</td> <td>9</td> <td>4</td> <td>28,000</td> </tr> <tr> <td>나군</td> <td>생명과학 I</td> <td>박*묘</td> <td>2-3</td> <td>11</td> <td>4</td> <td>23,290</td> </tr> <tr> <td>라군</td> <td>물리학 I</td> <td>문*아</td> <td>2-1</td> <td>10</td> <td>4</td> <td>25,2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월	화	수	목	방과후 1주차	6/29 (①)	6/30 (①)	7/1 (②)	7/2 (②)	온라인 수업	7/6	7/7	7/8	7/9	방과후 2주차	7/13 (③)	7/14 (③)	7/15 (④)	7/16 (④)	수업시간	월	화	수	목	방과후수업 1교시(16:10~17:00)	가(화학)	라(물리학)	나(생명과학)	라(물리학)	방과후수업 2교시(17:10~18:00)	나(생명과학)		가(화학)		수업시간	강좌명	담당교사	장소	인원	시수	수강료(원)	가군	화학 I	구*찬	2-2	9	4	28,000	나군	생명과학 I	박*묘	2-3	11	4	23,290	라군	물리학 I	문*아	2-1	10	4	25,200	
	월	화	수	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과후 1주차	6/29 (①)	6/30 (①)	7/1 (②)	7/2 (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온라인 수업	7/6	7/7	7/8	7/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과후 2주차	7/13 (③)	7/14 (③)	7/15 (④)	7/16 (④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업시간	월	화	수	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과후수업 1교시(16:10~17:00)	가(화학)	라(물리학)	나(생명과학)	라(물리학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과후수업 2교시(17:10~18:00)	나(생명과학)		가(화학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업시간	강좌명	담당교사	장소	인원	시수	수강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군	화학 I	구*찬	2-2	9	4	2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나군	생명과학 I	박*묘	2-3	11	4	23,2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라군	물리학 I	문*아	2-1	10	4	25,2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